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 신설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4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 신설 등 (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9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 신설 등(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략)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현행	개정안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u>사용</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③·④ (생략)	<u>선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⑥ ----- ----- ----<u>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u>----- -----.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u>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u>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주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받은 하수급인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¹⁾²⁾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

구분	유 형	기준
공공부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이 발주하는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부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이외 민간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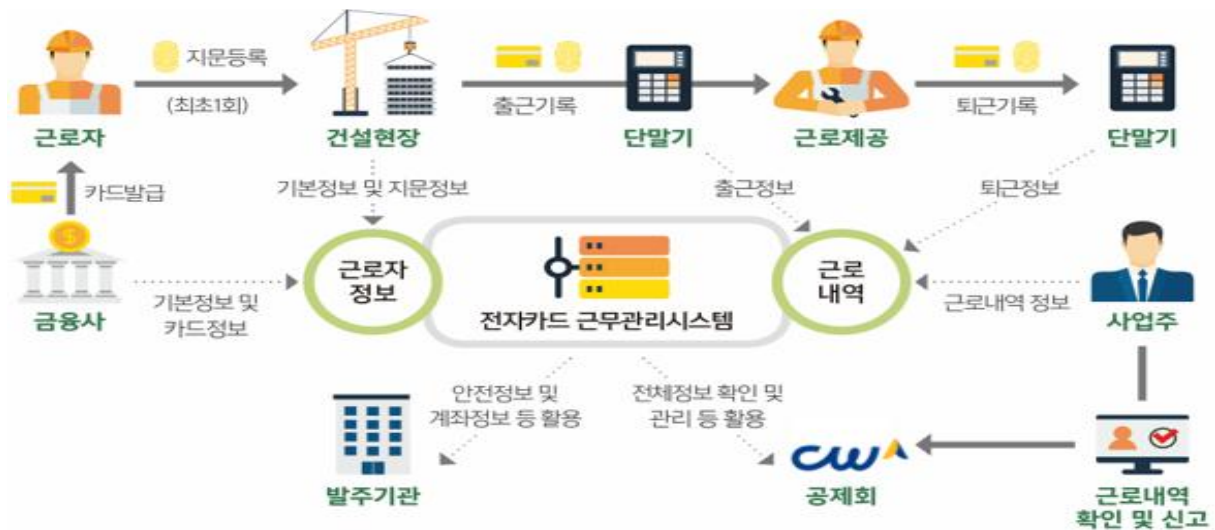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현장에 출퇴근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방식 >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바, 현행법 시행령은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³⁾

그러나 현행법 체계와 같이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어 단말기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카드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현장의 이동성이 큰 특성이 있어 모든 현장에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안 제13조제6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활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명시적인 위임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안 제26조제2항 제8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대상의 기준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과태료 규정은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제1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전자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현행법⁴⁾이 전자카드 미발급, 공제부금 미납부, 피공제자 근로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일수 신고 위반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둘 다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안 제 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참고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현황

(단위 : 대, 건)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	소계	89,104	4,071	5,241	7,425	31,532	40,835
	3억 미만	22,113	331	332	414	9,476	11,560
	50억 미만	42,847	1,252	1,341	2,041	16,043	22,170
	100억 미만	6,972	276	469	1,329	2,158	2,740
	500억 미만	9,309	1,034	1,308	2,109	2,277	2,581
	500억 이상	7,863	1,178	1,791	1,532	1,578	1,784
전자카드 모바일앱 설치 현황		653,819	27,327	106,688	128,178	200,850	190,776

<참 고>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구분		'20.11.27~(1단계)	'22.7.1~(2단계)	'24.1.1.~(3단계)
발주공사	공공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기준